서울신문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그 實踐要綱을 遵守한다

發行編輯兼印刷人 金鍾圭
主筆 李振燮
編輯局長 李禹世

서울市中區太平路1街31
<郵便番號 100>
서울신문社

電話交換㊼7711~21
直通 編輯局㊼7621㊼7289
廣告局㊼7288㊼7336
販賣局㊼7163㊼6150
出版局㊹1361㊼7240

購讀料 月定 1,500원 1部 80원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설치

內閣·戒嚴軍협조 위한 대통령補佐기구로

大統領이 議長, 委員 26명

當然職16명 任命職10명

정부는 全國非常戒嚴下에서 대통령이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하고 內閣과 계엄군당국간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諮問補佐機關인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를 설치했다고 정부대변인 李光杓 문공부장관이 31일 상오 발표했다. 이 위원회의 議長은 대통령이 맡으며 위원회는 국무총리,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外務 內務 法務 國防 文敎 文公長官, 中央情報部長, 大統領秘書室長, 戒嚴司令官, 合參議長, 各軍參謀總長및 國軍保安司令官등의 당연직위원 16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해 위원회안에 常任委員會를 설치한다.

常任委는 위원장과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非常대책위원과는 별도로 대통령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常任委의 사무를 분장처리하게 하기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분장사무는 常任委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되어있다.

李문공부장관은 非常對策委員會설치의 法的근거에대해 『戒嚴法 제9조, 11조, 12조및 同法施行令 제7조, 政府組織法 제5조에 근거를 둔것』이라고 밝히고 『이 위원회의 설치령은 지난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케된것』이라고말했다.

당연직 위원

▲國務總理 朴忠勳▲副總理겸經濟企劃院長官 金元基▲外務長官 朴東鎭▲內務長官 金鍾煥▲法務長官 吳鐸根▲國防長官 周永福▲文敎長官 李奎浩▲文公長官 李光杓▲中央情報部長署理 陸軍中將 全斗煥▲大統領秘書室長 崔侊洙▲戒嚴司令官 陸軍大將 李熺性▲合參議長 〃 柳炳賢▲陸軍參謀總長 〃 李熺性▲海軍參謀總長 海軍大將 金鍾坤▲空軍參謀總長 空軍大將 尹子重▲國軍保安司令官 陸軍中將 全斗煥

임명직 위원

▲陸軍大將 白石柱▲大統領國際政治擔當特別補佐官 金璟元▲陸軍中將 陳鍾埰▲陸軍中將 俞學聖▲陸軍中將 尹誠敏▲陸軍中將 黃永時▲陸軍中將 車圭憲▲海兵中將 金正浩▲陸軍少將 盧泰愚▲陸軍少將 鄭鎬溶

李光杓문공장관이 31일 國保委설치를 발표하고 있다.

常委長에 全斗煥情報部長서리

30人이내의 常任委, 分科委도 구성

崔圭夏대통령은 31일상오 靑瓦臺에서 이날 구성발족된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위원에게각각 임명장을 주었다.

崔대통령은 이자리에서 全斗煥중앙정보부장서리를 同非常對策委常任위원장으로지명, 임명장을 주었다.

위원들은 임명장을 받고朴忠勳국무총리서리 선창으로『본인은 國家非常事態하에서 국민전체에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영광스런 길잡이임을 깊이 자각하고 法令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직무를 다할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문을 崔대통령에게각각봉정했다.

委員명단

	當然職
國務總理	朴忠勳
副總理	金元基
外務部長官	朴東鎭
內務部長官	金鍾煥
法務部長官	吳鐸根
國防部長官	周永福
文敎部長官	李奎浩
文化公報部長官	李光杓
中央情報部長署理 陸軍中將	全斗煥
大統領秘書室長	崔侊洙
戒嚴司令官 陸軍大將	李熺性
合參議長 陸軍大將	柳炳賢
陸軍參謀總長 陸軍大將	李熺性
海軍參謀總長 海軍大將	金鍾坤
空軍參謀總長 空軍大將	尹子重
國軍保安司令官 陸軍中將	全斗煥

	任命職
陸軍大將	白石柱
大統領特別補佐官	金瓊元
陸軍中將	陳鍾埰
陸軍中將	俞學聖
陸軍中將	尹誠敏
陸軍中將	黃永時
陸軍中將	車圭憲
海兵中將	金正浩
陸軍少將	盧泰愚
陸軍少將	鄭鎬溶

崔圭夏대통령이 31일상오 靑瓦臺에서 國家保衛非常對策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軍官民일체로 難局 극복

政治發展은 社會安定위에서

崔大統領, 國保委첫회의서 諭示

崔圭夏대통령은 31일 상오 靑瓦臺에서 이날 구성 발족된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제1차회의를 주재하고 諭示를 통해『우리나라의 안전보장태세의 강화와 國家保衛를 위해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經濟難의 타개를 위해서도 공공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안정이 긴요함은 더 말할나위도 없다』고 전제,『나는 이 국가非常時局에 대처하여 대통령으로서, 또한 國軍統帥權者로서 憲法에 명시된바 國家保衛의 책임을 완수하고 국민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하기 위해 憲法과 관계법령에 입각하여 대통령諮問·補佐기구로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를 설치한것』이라고 밝혔다.

崔대통령은『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장구한 역사를 통해 수많은 國難을 겪으면서도 民族史의 正統性을 연면히 수호발전시켜온 우리 조상들과 선배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일깨워 애국심과 단합된 힘을 발휘할때』라고 강조하고『對策위원여러분은 이러한 나의뜻과 여러분에게 부하된 사명을 깊이 인식하여 軍官民이 한덩어리가 되어 秩序와 安定속에 難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할수 있도록 애국심과 슬기를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崔대통령은 이어 光州事態에 언급,『이번 事態는 그 원인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國法질서를 교란하고 國基마저 위태롭게 한 위험성을 내포한 중대한 事態였다』며『불행중 다행으로 대다수 선량한 光州시민들의 自制와 우리軍의 인내성있는 대처로 事態가 일단 收拾됐읍니다만 우리모두가 光州事態의 불행을 깊이 自省하여 이를 轉禍爲福의 전기로삼아 寬容과 互讓으로 和合團結함으로써 公共의 안정을 회복하고 사회안정을 이룩하는데 상호협력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國家保衛非常對策委 제1차회의에 즈음해 나는 무엇보다도 公共질서의 유지와 사회안정의 중요성을 거듭강조, 우리모두가 국가를 保衛하고 3천7백만국민의 生存權을 수호하는데 혼신노력할것을 對策委員들과함께 다짐하고자한다』고 덧붙였다.

崔대통령은『또한 국민적 여망에따른 政治發展도 國法질서유지와 사회안정의 바탕위에서만 추진될수 있는것』이라고 말하고『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속에서 국민생활의 안정에 힘을기울이는한편 국민이 원하는바가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려 行政전반과 戒嚴업무수행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지속적인 국가안전에 기여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光州事態로 1백70명 死亡

戒嚴司 발표
記事 3·7면에

「光州」敎訓삼아 國民和合을

崔大統領, 靑瓦臺閣議서 강조

崔圭夏대통령은 30일 지난번 光州사태에 관해 언급,『이번 사태는 우리 국민 모두의 불행이며 국가安危에 관련되는 중대한사태였다』고 지적하고『우리모두가 이번 사태의 쓰라린 교훈을 거울삼아 공공의 안녕질서와 사회안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轉禍爲福의 계기를 만들어 國民的 和合을 이룩해 나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崔대통령은 이날 하오3시 청와대에서 「5·21改閣」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 경제기획원으로부터 光州사태 구호및 復舊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하고『새內閣은 光州시민의 구호와 復舊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심의 안정과 국민생활보호에 熱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崔대통령은『또한 內閣은 작금의 社會不安과 經濟침체에 대처하여 경제난타개를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 국민생활의 安定과 고용기회의 확대, 그리고 생산과 수출의 증대를 위한 집중적 노력을 경주하라』고 아울러당부하였다.

國保委設置令

全文

▲제1조(설치)‖비상계엄하에서 계엄법제9조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보위하기위한 國策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國家保衛非常對策위원회(이하 非常對策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구성)‖비상대책위는 국무총리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中央情報部長 대통령비서실장 계엄사령관 합동참모회의의장 각군참모총장및 國軍保安司令官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회의의 소집)‖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장이되며 의제를 정하여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제4조(常任委員會의설치)‖비상대책위원회의위임에 따라 제1조에규정된 사항의 기획과 집행의 조정및 통제를 하게하기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國家保衛非常대책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상임위원회의구성)‖①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설치)‖①상임위원회의 사무를 분장처리하게 하기위하여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수있다. ②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그관장사무는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제7조(운영세칙)‖이 令에 규정된 이외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부칙(시행)‖이 令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反韓활동 强化 다짐

朝總聯 結成25돌에

【서울=時】朝總聯은 지난 25일 결성 25주년을 맞아 「도오꾜」에서 이른바 중앙대회를 개최, 이 조직을 北傀黨과 金日成의 이른바 「唯一思想체계」로확립된北傀의 강력한 在日공작기지로 조성시키는 한편 종래의 反韓선전활동강화동을 다짐한 것으로 30일 北傀방송들이 보도했다.

의장 韓德銖를 비롯한 조직간부급들과 산하기관·단체의 연성회원등, 이밖에 친선공연차 日本을 방문중인 北傀의 「平壤예술단」(단장 李상태) 일행등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 朝總聯은 조직기반의 전반적인 재정비를 목적으로 올해초부터 벌여오고있는 이른바 「애국혁신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하면서 그간이 다짐한것으로 北傀방송들이 전했다.

간첩自首기간 6월말까지 연장

정부는 최근 국내의 소요사태등과 관련, 北傀의 간첩南派와 고정간첩등 불순분자의 준동이 증가되고 있음에따라 지난 4월1일부터 이달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키로 하였던 간첩자수및 신고강조기간을 오는6월30일까지 1개월간 연장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기간중 간첩을 신고하는사람에게는 法定賞金 3천만원이외에 특별상금 2천만원을 더하여 모두 5천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수한 간첩에게는 자수한 범죄사실에대해 일체 처벌치않고 越南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따라 직업알선·주택제공·정착금지급등 국가원호혜택을 부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준다.

자수간첩의 친척, 인척관련자들도 자수자에 준하여 처벌하지 않기로했다.

정부는 지난23일 서울역에서 南派간첩을 신고한 두여인에게 법정상금및 특별상금 5천만원과 報勞金50만원을 지급했다.

農村振興廳長 尹勤煥씨
勞動廳次長 韓眞熙씨

정부는 오는 6월2일자로 農村振興廳長에 尹勤煥(사진) 同廳農業技術研究所長을 승진발령했다.

◇尹廳長 약력(水原·51세) ▲서울大農大卒 ▲농촌진흥청시험국研究調整課長▲〃農業經營研究所長▲農林部農業經營課長▲水産部農産次官補·殖産〃▲農村振興廳農業技術研究所長

정부는 또 31일 勞動廳次長에 韓眞熙 勞動廳勞政局長을 승진발령했다.

光州市長 文昌洙씨

내무부는 31일 具龍相光州시장을 대기발령하고 후임에 文昌洙全南도기획관리실장을 승진발령했다. 全南도기획실장에는 范澤均全南도내무국장이 전보됐다.

30일 세계의 表情

地名	기온C	톱·뉴스
뉴욕	22~15	흑인민권지도자조던피격 중태
런던	16~14	조던피격 중태
파리	16~7	伊기자, 붉은여단게릴라에피살
도오꾜	27~19	참의원선거운동 시작
홍콩		(入電없음)

말씀

비록 좋은 種子라 해도 때를 맞춰 뿌리지 않으면 나지 않고, 때를 맞췄다 해도 땅이 肥沃치 않으면 되지 않는다. 〈燕岩 朴趾源〉

관계法條文

戒嚴法▲第9條‖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는 國防部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단 전국을 계엄지역으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第11條‖非常戒嚴의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모든行政사무와 司法사무를 관장한다.

▲第12條‖前2條의경우에 당해지역내의 행정기관 또는 司法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戒嚴法시행령▲第7條‖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이 法제9조에 의하여 계엄사령관을 지휘 감독함에 즈음하여 國策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부의하여야하며 각부처의 소관사무중 주요한 사무와 관련있는 사항은 그주관부처의 長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협의하여야한다.

政府組織法▲第5條(부속기관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험시설, 연구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자문기관등을 둘수있다.

석고보드
불연내열비경제
한국스레트

週刊스포츠
불타는 젊음
싱싱한 기사
통쾌한 화제

국내(광산직)및 해외파견 사원모집

당사는 성실하고 유능한 사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노허제80—244호)

1. 모집부문및 자격

모집부문	모집직종	인원	응시자격
기술직	토목, 건축, 측량, 기계, 시험(도로,상수도관계), 중기관리,	○○명	현장소장 및 주임기사, 설계, 견적시공, 공정관리, (CPM)측량및 시험각부분 경력소지자및 면허증소지자
관리직	영문행정(해외), 총무, 경리, 자재, 노무, 무역	○○명	각분야 공히 유경험자
기능직	십장, (토공, 포장, 구조물) 강구조물(교량), 중기운전, 목공 철근, 전공, 용접, 배관, 크랏샤공 프렌트공, 휘닛샤공, 정비공, 덤프, 경차량, 포장공, 요리사, 콘크리트공	각○○명	해당장비 면허 소지자 해당분야 3년이상 유경험자
광산직 (국내)	지질조사, 채광(간부및 감독)	각○명	현장유경험자(특히 시공유경험자우대)
	기능직(착암, 쇼벨, 권양, 궤도양수, 지주, 조공, 보링)	각○○명	현장 유경험자우대

2. 일반자격
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나) 해외근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광산직 제외)
다) 영어 또는 아랍어에 능통한자는 우대함 (광산직 제외)
라) 1930년 1월 1일이후 출생한자
마) 기술직, 관리직, 광산간부직
정규대학졸업 또는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업무 3년이상 유경험자

3.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 ……………… 1부
나) 면허증사본 (소지자에 한함) ………………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기술직, 관리직에 한함) ……………… 1부

4. 전형방법
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기술직, 관리직은 필기시험 및 면접후 결정
다) 기능직은 실기및 면접

5. 제출기간및 제출처
가) 제출기간 : 1980년 6월 3일—1980년 6월13일
나) 제 출 처 : 종합기획실 인사관리부　중앙우체국 사서함 6226호

6. 기타사항
가) 이력서 우측 상단에 응시부문 및 직종 주기할것
나) 연락처는 통·반까지 상세히 명기할것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라) 직접 래방 및 전화문의는 일체사절

당사는 해외취업자를 모집함에 있어 부조리행위를 일체 용납하지 않읍니다. 만일 부조리행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노동청해외근로국 (63—8521) 또는 당사 종합기획실 인사관리부 (52—6101~9)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韓寶그룹
韓寶綜合建設株式會社